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686 |
|----------|------|

제출일자 : 2025. 6. 5.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자활사업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점포 전세금 대여 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포 전세금 대여금 상한액 인상(안 제10조제2항)

- 현행 :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개정 : 1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단, 개인창업자 : 현행 2천만원 이하 => 개정 3천만원 이하

나. 점포 전세금 대여기간 연장(안 제10조제3항)

- 현행 : 최장 6년 => 개정 : 최장 10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5. 4. 10.~ 4. 30.)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미첨부사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7”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2천만원 이상 1억원”을 “1천만원 이상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전세금 대여계약 시 그 상환기한은 5년 이하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중 “「대구광역시달성군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금 상환기한 개정규정의 적용 특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조례 제10조에 따라 체결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점포 전세금 대여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제18조의7----- ----- ----- ----- -----.</p> |
| <p>제10조(점포 전세금 대여) ① (생략) ② 전세금은 <u>2천만원 이상 1억원</u> 이하의 범위에서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군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창업자에 대해서는 <u>2천만원</u> 이하의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③ 전세금 대여기한은 1년이나 2년</p> | <p>제10조(점포 전세금 대여) ① (생략) ②-----<u>1천만원 이상 3억원</u>----- ----- ----- -----<u>3천만원</u>----- -----. ③ 전세금 대여계약 시 그 상환기</p> |
| <p>단위로 설정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p> | <p>한은 5년 이하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p> |
| <p>제18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 <p>제18조(관계규정 준용)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p> |

관 계 법 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21. 7. 2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28.>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16.]

□ 2025년 자활사업 안내(page.235,236)

IV. 자활기금 [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 지침]

- 지원범위 : 임대가 원칙이나, 임대가 불가능하고 구입이 비용효과적인 경우(예시:임야 등)에 한해 구입비용 지원

※ 농지 등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임차권의 설정으로 채권을 확보가능

- (임대지원) 1천만원~3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전세금) 전액 원칙

※ 단, 개인창업자의 경우에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지역여건, 사업규모 및 업종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사업성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중 략)

- 지원기간 : 임대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가능(최장10년)
- (지원 연장 여부 결정) 지원단위 기간 만료 전까지 보장기관은 사용수수료 납부현황,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검토하여 계속지원 또는 지원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원단위기간 만료 후 다른 장소로 점포를 이전한 경우 : 당초 지원점포에 대한 세금 환수여부, 지원가능 기금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간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가능

붙 임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신규 대여 시 발생

5년 평균 대여금 : 31,250천 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지침에 의한 금액과 기한의 조정으로 대여 계약의 환수 기간은 증가하나 추가 비용은 없으며, 평균 대여금이 5천만 원 미만임

4. 작성자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장 배정해